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등 〉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56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요지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7. 1.
3. 회 부 일: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활동의 주체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정의하고 선수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금지행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에 있어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함께 심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징계 등 금지행위나 처벌 관련 조항에서만 심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의 정의 규정이나 양성 및 육성의 지원 근거, 등록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심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보호체계가 부재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조제11호의3·제18조의18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현행법상 “심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심판 육성 및 고용, 심판의 종목단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1호의3 신설 등).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의2. (생략) <u><신설></u> 12. (생략)	제2조(정의) ----- -----. 1. ~ 11의2. (현행과 같음) <u>11의3. “심판”이란 운동경기에서 규칙의 적용 여부나 승부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u>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선수와 체육지도자</u> 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 ----- <u>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u> ----- -----. ②·③ (현행과 같음) <u>④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아마추어 경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심판을 고용할 수 있다.</u> <u>제18조의18(심판의 등록의무) ① 심판은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u>

	② 심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심판¹⁾이란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히며, 경기 또는 대회 등에서 규칙의 적부, 경기의 우열이나 승부를 판정,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하며, 스포츠경기의 3대 축(선수, 지도자, 심판)의 하나로 대회의 승패는 물론 원활한 대회 운영,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²⁾

‘선수’와 ‘지도자’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 조항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³⁾ ‘심판’의 경우 ‘선수 등의 금지행위’(법 제14조의3),

1) ‘심판’: 「체육」 운동 경기에서, 규칙의 적부 여부나 승부를 판정함. 또는 그런 일이나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미숙 등, 2014. 8. p.1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생략)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법 제18조의2),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법 제18조의13)’ 등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고, 대한체육회 「정관」·「경기인 등록규정」·「심판위원회규정」, 각 프로연맹 정관·규약 등의 하위 규정에서 심판 육성, 심판 등록, 계약 등 관련 사항이 마련되어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심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더불어 심판 육성 및 고용, 심판의 종목단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여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먼저, 정의 규정(안 제2조제11호의3)과 관련하여, 심판과 함께 경기의 세 축을 이루는 ‘선수’와 ‘지도자’는 현행법에 이미 정의되어 있다는 점,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이미 ‘심판’을 ‘선수’, ‘체육지도자’와 더불어 ‘체육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⁵⁾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4)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4.>

1. “경기인”은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를 말한다.
2. “선수”는 대회참가 등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지도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등록”은 회원종목단체의 해당 종목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심판의 등록의무(안 제18조의18)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에 의하면 심판은 경기인으로서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한 후 활동할 수 있고⁶⁾, 개정안은 경기인등록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⁷⁾,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7조(경기인등록시스템) 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 경기인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종목단체에 등록 신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종목단체가 이를 행한다.

1. 해당 시·도종목단체가 없을 경우

2. 심판의 등록

② 경기인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 스포츠인권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회원종목단체는 필요 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승인) ① 경기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의 제14조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회원종목단체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등록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 등에 통보한다. (단서 생략)

7) < 경기인 등록 현황(2023. 12. 31. 기준) >

○ 등록팀 및 선수 현황 (단위 : 개, 명)

연도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		계	
	팀	선수	팀	선수	팀	선수	팀	선수	팀	선수	팀	선수
2023(71종목)	8,068	59,925	7,364	44,681	5,320	32,777	1,651	16,642	3,715	29,670	26,118	183,695

○ 등록지도자 현황 (단위: 명)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계
6,620	6,692	5,097	2,185	5,469	26,063

○ 등록심판 현황 (단위 : 명)

국내심판						국제심판						계
1급	2급	3급	4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4급	기타*	소계	
1,949	1,472	1,936	439	2,294	8,090	145	131	88	17	167	548	8,638

주1: 기타-종목단체별 심판 등급체계가 달라 1~4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2: 프로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의 경우 별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징계정보시스템’(스포츠 윤리센터에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⁸⁾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취지로 보임⁹⁾.

한편,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게 프로연맹과 대회별로 계약을 맺는 프로 심판 등의 경우 경기인등록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바¹⁰⁾, 각 종목별 경기 및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동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 8)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생략)에 소속된 선수(생략),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생략)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9)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의 조항을 통해 심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전문체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체육현장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심판 직종 특성상 단체에의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입법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임.
- 10) 참고로,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에서 선발하여 위임계약 형태로 활동하는 상임심판의 경우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

<상임심판 제도>

- 목적: 심판활동 여건 개선을 통한 심판 직위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심판 자질 및 역량 평가 강화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 기준: 국제심판 전 급수 또는 국내심판 1급 상당 이상의 심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제·국내 심판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중 심사를 통해 회원종목단체에 직접 선발된 심판
- 활동: 1~12월 중 11개월 범위 내에서 계약하며, 계약기간 동안 해당 종목 상임심판으로 전임 근무(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등 2/3이상 심판배정)
- 관리: 사업 총괄은 대한체육회이며, 선발 및 교체 등 전반적인 운영은 개별 종목단체임
- 현황: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 기준 25개 종목에서 총 140명의 심판이 활동 중
- 예산: 2023년 기준 세부사업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5161-307)’ 중 내내역사업 ‘상임심판 제도 운영’으로 55억원 집행

자료: 「2023 상임심판제도 운영 평가」, 문체부·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대한체육회, 2023.12.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의 심판 고용(안 제14조제4항)과 관련하여, 체육단체의 고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 현재 회원종목단체에서 상임심판으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자들은 고용계약보다는 위임계약의 형태에 가깝다는 점¹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²⁾

문 의 처

02)6788-5375

11) 대한체육회 노무사 자문 결과 동 근무형태의 경우 “채용”이 아닌 “선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2)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심판은 선수 및 지도자와 달리 각 대회 또는 경기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